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7.(화) 배포 2026. 11. 17.(화) 08:50

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공포·시행

- 예방접종 피해보상, 대리인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
-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마련을 통한 운영 연속성 보장
- 관리대상 바이러스 범위 확대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

【84-5】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국민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(이하 「감염병예방법」) **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**되어 **11월 17일부터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**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**하는 한편, **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**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먼저, **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**하는 경우 **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**해졌다.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.

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**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**할 수 있도록 하여 **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**이다.

다음으로, 일상 방역의 핵심인 **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**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. 지난 4월 「감염병예방법」 개정을 통해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.

소독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지위승계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.

또한, **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**하도록 하고, **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**할 수 있도록 하여 소독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.

또한, **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**하였다. **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**를 종전의 '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(인체유래 H5N1, H7N7, H7N9)'에서 **'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'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**하였다.

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**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·운영 상태를 점검**해 온 기존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**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**, 취급시설 설치·운영허가서 등의 영문서식을 신설하여 바이오 연구·개발 기관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.

* **(고위험병원체)**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

그 밖에도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**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내용에 '검체(檢體)'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**함으로써, 감염병의 원인 규명 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이와 함께 **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효율화**하였다. 기존에 시스템 운영 권한만 위임되었던 것을 구축 권한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영상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구축 단계부터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
또한, **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를 조정**하여 기존 **'화학적 방법'보다 '생물학적 방법'을 앞서 규정**하였다.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방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,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.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”고 전했다.

<별첨> 1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
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선규 (043-719-71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희 (043-719-7132)
담당 부서 <협조>	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	책임자	과 장	황경원 (043-719-7810)
		담당자	연구관	장은정 (043-719-7819)
	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박재선 (043-719-7840)
		담당자	연구관	최용욱 (043-719-8220)
	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관	주정원 (043-719-8521)
	진단분석국 생물안전평가과	책임자	과 장	손태종 (043-719-8040)
		담당자	연구관	이덕용 (043-719-8043)
	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호평 (043-719-8350)
		담당자	주무관	김하늘 (043-913-221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